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리빙스톤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장이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리빙스톤유치원은 감사대상기간인 2018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원장의 직위에 대한 공석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의 교원이 아닌 설립자 ○○○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리빙스톤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직원 근로계약 부적정
기 관 명 리빙스톤유치원
내 용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업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빙스톤유치원은 근로자(교직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빙스톤유치원에서 계속 사용해온 ‘표준근무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리빙스톤유치원의 근무 및 보수에 관한 내부규정’ 상에도 수당의 지급 시기와 수당금액, 보수지급, 휴가(하계 및 동계 휴가)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리빙스톤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직원 근로계약 부적정(퇴직금 미지급)
기 관 명 리빙스톤유치원
내 용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명시)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및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빙스톤유치원은 감사 대상기간인 2018~2020회계연도 중 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빙스톤유치원 근무 및 보수에 관한 내부규정」 제7조(퇴직금 지급) 제1항에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서상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1]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1] 교직원 퇴직금 미지급 현황

성명	담당업무	근로기간	퇴직금 지급여부	비고
○○○	주방 도우미	20XX.XX.XX.~20XX.XX.XX.	미지급	
○○○	시설, 관리	20XX.XX.XX.~20XX.XX.XX.	미지급	
○○○	방과후 과학실험	20XX.XX.XX.~20XX.XX.XX.	미지급	
○○○	보조교사	20XX.XX.XX.~20XX.XX.XX.	미지급	
○○○	보조 및 방과후 영어	20XX.XX.XX.~20XX.XX.XX.	미지급	

※ 일자 및 금액은 리빙스톤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리빙스톤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연말정산 미 실시)
기 관 명 리빙스턴유치원
내 용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해당 지급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에 따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일용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 제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리빙스톤유치원은 아래 [표2]와 같이 감사대상기간인 2018~2020학년도 중 근로한 교직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사대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다가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2021년 2월분부터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2021년 1월 2일에 각각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2021년 1월 가입신청하여 2021년 2월 20일자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년 2월분을 2021년 3월 4일 납부하는 등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연말정산의 업무를 각각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2018~2020회계연도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연말정산 부적정 현황

회계연도	성명	생년월일	직책	급여 지급액 [단위: 원]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연말정산 실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8	○○○	XX.XX.XX.	○○○○	26,500,000	×	×	○	○	×	×	×
	○○○	XX.XX.XX.	○○○○	20,150,000	×	×	○	○	×	×	×
	○○○	XX.XX.XX.	○○○○	20,848,400	×	×	○	○	×	×	×
	○○○	XX.XX.XX.	○○○○	14,700,000	×	×	×	×	×	×	×
	○○○	XX.XX.XX.	○○○○	16,400,000	×	×	×	×	×	×	×
	○○○	XX.XX.XX.	○○○○	11,700,000	×	×	×	×	×	×	×
	○○○	XX.XX.XX.	○○○○	16,200,000	×	×	×	×	×	×	×
	○○○	XX.XX.XX.	○○○○	9,200,000	×	×	×	×	×	×	×
	○○○	XX.XX.XX.	○○○○	8,200,000	×	×	×	×	×	×	×
	○○○	XX.XX.XX.	○○○○	2,800,000	×	×	×	×	×	×	×
	○○○	XX.XX.XX.	○○○○	16,200,000	×	×	×	×	×	×	×
	○○○	XX.XX.XX.	○○○○	11,800,000	×	×	×	×	×	×	×
	○○○	XX.XX.XX.	○○○○	3,000,000	×	×	×	×	×	×	×
	○○○	XX.XX.XX.	○○○○	1,000,000	×	×	×	×	×	×	×

회계연도	성명	생년월일	직책	급여 지급액 [단위: 원]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연말 정산 실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 사학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2019	○○○	XX.XX.XX.	○○○○	28,100,000	×	×	○	○	×	×	×
	○○○	XX.XX.XX.	○○○○	22,850,000	×	×	○	○	×	×	×
	○○○	XX.XX.XX.	○○○○	21,650,000	×	×	○	○	×	×	×
	○○○	XX.XX.XX.	○○○○	22,540,000	×	×	○	○	×	×	×
	○○○	XX.XX.XX.	○○○○	15,100,000	×	×	×	×	×	×	×
	○○○	XX.XX.XX.	○○○○	9,900,000	×	×	×	×	×	×	×
	○○○	XX.XX.XX.	○○○○	21,800,000	×	×	×	×	×	×	×
	○○○	XX.XX.XX.	○○○○	4,100,000	×	×	×	×	×	×	×
	○○○	XX.XX.XX.	○○○○	5,300,000	×	×	×	×	×	×	×
	○○○	XX.XX.XX.	○○○○	3,100,000	×	×	×	×	×	×	×
	○○○	XX.XX.XX.	○○○○	7,400,000	×	×	×	×	×	×	×
	○○○	XX.XX.XX.	○○○○	8,400,000	×	×	×	×	×	×	×
	○○○	XX.XX.XX.	○○○○	5,300,000	×	×	×	×	×	×	×
2020	○○○	XX.XX.XX.	○○○○	29,100,000	×	×	○	○	×	×	×
	○○○	XX.XX.XX.	○○○○	23,600,000	×	×	○	○	×	×	×
	○○○	XX.XX.XX.	○○○○	24,320,000	×	×	○	○	×	×	×
	○○○	XX.XX.XX.	○○○○	13,000,000	×	×	×	×	×	×	×
	○○○	XX.XX.XX.	○○○○	7,000,000	×	×	×	×	×	×	×
	○○○	XX.XX.XX.	○○○○	16,600,000	×	×	×	×	×	×	×
	○○○	XX.XX.XX.	○○○○	5,600,000	×	×	×	×	×	×	×
	○○○	XX.XX.XX.	○○○○	2,400,000	×	×	×	×	×	×	×
	○○○	XX.XX.XX.	○○○○	2,000,000	×	×	×	×	×	×	×
	○○○	XX.XX.XX.	○○○○	2,000,000	×	×	×	×	×	×	×
	○○○	XX.XX.XX.	○○○○	9,000,000	×	×	×	×	×	×	×
	○○○	XX.XX.XX.	○○○○	8,400,000	×	×	×	×	×	×	×

※ 2020회계연도 중 2021년 2월분 급여부터 국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021년 2월분부터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21년 1월중 가입함

※ 일자 및 금액은 리빙스틴유치원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리빙스턴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